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2011. 12.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됨.

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운영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개정

나.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정관(안 제2조, 제3조)

다.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의 기구(안 제4조 및 제5조)

라. 운영협의회의 임원 및 위원의 해촉(안 제6조 및 제7조)

마. 운영협의회장 및 위원의 수당(안 제8조)

바. 운영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2)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
5.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총 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단, 각 리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각 임원은 제5조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1. 회장 1명(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회장·부회장·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12명 이하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